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11.02

행정위원회

1. 審查經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10월 15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10월 23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 10. 26)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출)

가.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중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영등포구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 변경 : 종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평생교육법」 제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로 변경
- 모든 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도별 평생학습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신설 - 안 제3조제2항)
-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및 학습 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평생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생학습협의

회를 구성함. (안 제5조~안 제12조)

-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할 주역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및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16조)
- 성인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신설 - 안 제17조)
- 구청장은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학습의 진흥과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신설 - 안 제18조)
- 평생학습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신설 - 안 제19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천 오 운)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제16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그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본 조례안 내용일부 중 명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고 특히 제9조제3호 규정에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해촉 시 해당위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사항인 만큼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적용하는 등 중대한 사안 결정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제4조 제1항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단체에”를 “평생학습 참여자, 관련기관 및 단체에”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을 때”로 한다.

5. 審查結課 : 修正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번호	242
----------	----------	-----

발의년월일 : 2009. 10.
발의자 : 윤동규 의원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 내용일부 중 명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고 특히 제9조제3호 규정에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해촉 시 해당위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사항인 만큼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적용하는 등 중대한 사안 결정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제4조 제1항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단체에”를 “평생학습 참여자, 관련기관 및 단체에”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을 때”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1항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단체에”를 “평생학습 참여자, 관련기관
및 단체에”로 하고

제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3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에서 심의·의결 하였을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 표

개정안	수정안
<p>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 및 학습 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9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p>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평생학습 참여자, 관련기관 및 단체에</p> <p>(삭제)</p> <p>제9조(해촉)</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을 때</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42 호
----------	---------

제출연월일 : 2009.10.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평생교육법 중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 개발 등 영등포구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종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평생교육법」 제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로 변경

나. 모든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도별 평생학습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신설 - 안 제3조제2항)

다.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및 학습 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의 협력증진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함. (안 제5조~안 제12조)

마.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할 구역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및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16조)

바. 성인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신설 - 안 제17조)

- 사. 구청장은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학습의 진흥과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신설 - 안 제18조)
- 아. 평생학습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신설 - 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2009.5.8공포, 2009.8.9시행)
-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예산편성 예정.
- 다. 합의 : 필요없음.
- 라. 기타
- (1)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09. 8. 20 ~ 9. 9.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규제심사 심사대상 사무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영등포구의 평생 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 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이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정·사 회 및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의무교육수준의 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도별 평생학습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등포구에 소재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학습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 및 학습 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영등포구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생학습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영등포구 평생학습담당 소관 국장
 3. 영등포구와 관할 지역교육청의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학습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학습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3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 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 운영한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크 추진
3.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5.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지원
6.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지원
8. 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9.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평생학습 협력기관 · 시설 지정)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 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 시설로 지정·이용할 수 있다.

제4장 성인문해교육

제17조(성인문해교육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 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3. 성인문해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개발 및 지원
- ③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18조(협력 및 협조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 학습의 진흥과 평생학습의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1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해촉 된 것으로 본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영등포구의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평생학습"이라 함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라 함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제〉
③ "평생교육사"라 함은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2.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성인문해교육"이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정·사회 및 직업 생활에서 필요한 의무교육수준의 기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평생학습의 진흥)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현 행	개 정 안
<p>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삭제〉</p> <p>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도별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영등포구에 소재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학습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 및 학습 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4조(설치) ①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p>	<p>제5조(설치) 별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영등포구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학습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영등포구에 재직 중인 국과장급 공무원과 구의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p> <p>④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기타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p>	<p>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영등포구 평생학습담당 소관 국장 3. 영등포구와 관할 지역교육청의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학습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학습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p>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p> <p>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삭제〉
	〈삭제〉
(신설)	<p>제9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p>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p> <p>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p>
〈현행 제12 조 전면개정〉	<p>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제8조(설치) ①구청장은 구민이 원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p> <p>②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와 유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p>	<p>제13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 21조에 따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 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유영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④ 평생학습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3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	〈삭제〉
⑤ 위탁자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제9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크 추진 3.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5.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지원 6.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지원 8. 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9.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직원 배치) ① 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제11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p>	<p>제16조(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 시설로 지정·이용할 수 있다.</p>
<p>제11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p>	<p>〈삭제〉</p>
<p>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2조로 개정〉</p>
<p>〈신설〉</p>	<p>제17조(성인문해교육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 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3. 성인문해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 개발 및 지원 ③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8조(협력 및 협조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학습의 진흥과 평생학습의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해촉 된 것으로 본다.</p>